# PCT국제출원 제도

**PCT Application System** 

원정욱(J. W. Won) 지적재산개발실 선임연구원 이상무(S. M. Lee) 지적재산개발실 연구원

송근장(K. J. Song) 지적재산개발실 책임행정원, 실장

본 고는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PCT 국제특허 출원제도를 소개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작성하였다. 국제출원의 개요를 설명하고 PCT출원 처리절차 특히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여 연구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떻게 이 제도를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 하였다.

# 1. 서 론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우선권주장 없이 출원하는 직접출원방법과 파리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조약우선권출원방법, 지역출원제도를 이용한 지역특허출원방법, 그리고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PCT출원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PCT출원제도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함에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기술교류협력에 이바지하고자 1970년에 워싱턴에서 35개 국가에 의해 조인된 다자간 조약이다. 현재는 87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4년 5월 10일 PCT에 가입하여 국제출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금은 PCT출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급기야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역사적인 큰 획을 긋게 될 큰 사건이 생겼다. 이 큰 사건이란 '98년 7월 1일 이후 한국이 국제예비 심사기관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변화와 국제출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 PCT국제출원제도를 소개할 필요성이 커져 본 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PCT출원제도를 설명하기 앞서 먼저 외국으로 출원하는 여러 경로를 알아보고 PCT출원의 각 단계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PCT출원절차는 크게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누어지며 국제단계는 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공개 그리고 국제예비심사로 나누어지며 국내단계는 각국의 특히 및실용신안제도에 따른다.

상기와 같은 PCT출원제도의 각 단계별 프로 세스에 대하여 설명한 후 PCT출원제도의 장단점 을 비교하고 '98년 7월 1일 이후 한국이 국제예 비심사기관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과 향후동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Ⅱ. 외국출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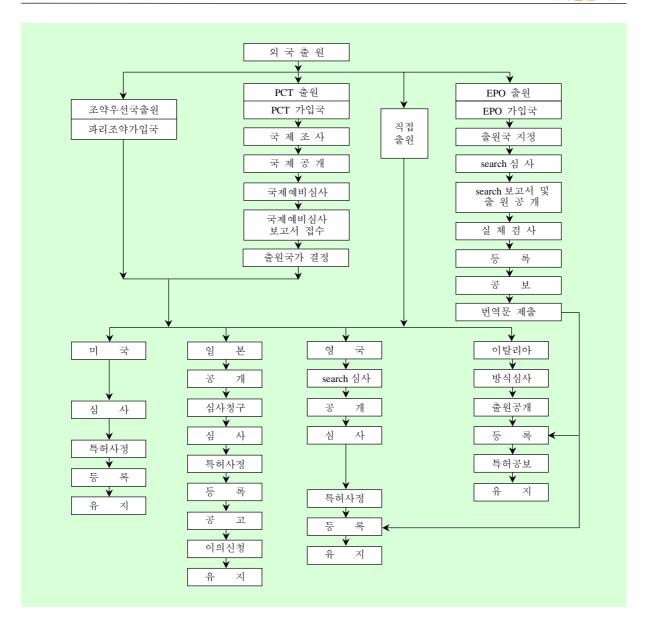
외국에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이 있 다. 네 가지 방법은 우선권주장 없이 출원하는 직 접출원방법과 파리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 하는 조약우선권출원방법, 지역출원제도를 이용 한 지역특허출원방법, 그리고 PCT출원이 있다. 이 네가지 출원방식에 대하여 각각 그 절차를 알 아보고 어느 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알 아본다. (그림 1)을 보면 각 국가의 국내단계 도 식을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를 선정하여 출원 에서 등록 유지되는 과정을 특징적으로 압축하여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선출원주의를 택하 지 않고 선발명주의를 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 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출원하는 국가이기 때문이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거의 제도 가 비슷한 국가이며, 영국은 search심사라는 특이 한 제도를 둔 국가이며, 이탈리아는 무심사 국가 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네 국가가 각각 특이한 제 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기 네 국가를 선정하였 다. 각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네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우선권주장의 가능성 여부, 비용, 지역, 출원국수, 각 조약에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 직접출원

우선권제도를 둔 취지는 외국과의 거리, 비용, 언어, 각 국가의 상이한 특허제도를 극복하고자 할 때 시간상으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다[1]. 우선권주장은 최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 국으로 출원했을 때 타국에서도 최초출원국가와 신규성 등의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우선권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출원할 때 이를 직접출원이라 한다. 그 러면 어느 때 직접출원을 하게 되는가. 두 가지 경 우가 있다. 첫째는 두개 이상의 국가에 거의 동시 에 출원을 할 때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타국 에서 신규성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면 굳이 우선권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의 경우는 우선권주장기한을 넘긴 경우이다. 즉 최초출원국가에 출원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우 선권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는 발명자들 이 출원제도를 잘 몰라 국내출원 하고 1년 이후에 외국출원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도 국내출원의 공개시점이 지난 것은 외국출 원도 할 수 없지만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 고 국내 공개가 되지 않았을 때 우선권주장 없이 직접 출원한다. 물론 이 때는 신규성적용의 소급 효를 적용받지 못하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출원 하여 권리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 다.

# 2. 조약우선권출원

파리조약은 1883년 3월 20일 조인된 이래와 여러번 개정을 하였고 우리나라는 1980년 5월 4일 동맹국으로 가입을 하였다. 파리조약의 3대 원칙으로는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제도의 인정, 독립의 원칙이 있으며 주로 외국출원시 파리조약 우선권주장을 하여 출원하고 있다[2]. 파리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등이 최초 출원일에 기준하여 판단된다. 외



(그림 1) 외국출원 루트

국으로 출원할 때에는 주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제도는 보통 5개국 이하의 소수 국가에 출원할 때 사용한다. 특허비용은 상당히 많이 소모되므로 적은 국가에 출원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현재 140개국이 가입하고 있으

므로 PCT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출원하는 것이 좋다. 물론 주요국가 대부분은 PCT조약에 가입했으나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조약우선권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서류는 국내출

원했다는 특허청의 문서와 해당 국가의 우선권 주 장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3. 지역특허제도

지역특허제도란 근접한 지역내의 국가끼리 조 약을 체결하여 지역특허에 가입한 국가끼리 인 정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EPO(European Patent Organization: 유럽특허기 구)에 가입한 조약국의 EPO출원제도이다. 지역 특허제도로는 OAPI, ARPIO, EURASIA, EPO의 지역특허제도가 있다. 유럽특허제도(EPO출원제 도)는 유럽지역에 5개국 이상 출원할 경우에는 상 당히 좋다. 현재 18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부분이 유럽지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유럽특허출원제 도는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출원시 미리 출원 국을 지정하고 EPO의 search부서에서는 search심 사를 한다[3]. 그 후 실체심사에 들어가서 거절사 정이 되지 않으면 등록이 되고 유럽각국에 번역문 과 등록료를 내면 각국에 등록되고 이에 따라 특 허가 등록유지되는 것이다.

#### 4. PCT출원제도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국제출원을 하고 나면 국제조사 국제공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으면 일단 이를 보고 예비심 사청구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PCT II장의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본 고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국제예비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설명하고,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을 부수적으로 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이 후로는 PCT국제출원제도에 대하여 상세 히 설명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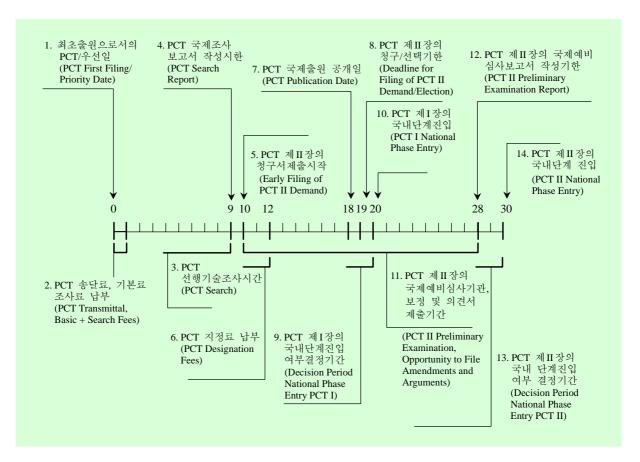
# III. PCT국제출원의 일정표

PCT국제출원하는 방법은 최초로 어느 특정 국가에 출원을 하고 그로부터 우선권 주장을 하 여 PCT국제출원하는 방법과 곧바로 PCT국제출 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일정표는 약간 다르나 본 고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간단히 차이점을 설명하면 전자의 경우 는 PCT출원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1개월내에 수수로를 내면 된다. 전자 의 경우는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시기가 최초 출 원일로부터 16개월이고 후자의 경우는 PCT출원 일로부터 9개월 내에 작성된다. 하지만 두 가지 경 우 모두 PCT I장의 진입단계와 PCT II장의 진입 단계 시점은 같다. 또한 국제예비심사 보정 및 의 견서 제출기한과 예비보정서 작성기한도 또한 같 다. (그림 2)의 PCT 일정표는 직접 PCT출원한 경 우를 나타내고 〈표 1〉은 (그림 2)의 일정표에 대한 설명을 표로 작성했다.

# IV. 세부절차

# 1. 국제출원

PCT제도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제도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규칙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출원양식 서류부터 복잡하고 발명자는 절차 및 방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변리사들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림 2) PCT 일정표

PCT 출원시 제출해야 하는 양식은 출원서(양식PCT/RO/101),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이 필요하다. 이외에 필요한 경우 위임장, 우선권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다[4]. 출원양식에는 PCT출원할 때 지정국을 지정하는 란이 있다. 여기에 출원하고 싶은 국가를 마킹하면 지정국이 지정되는 것이고 지역특허를 지정해도 상관없다. 지정국은모든 국가를 다 지정해도 상관없다. 지정료 비용은 11개국을 초과하면 비용은 일정하기 때문이다. 우선권서류는 원칙적으로 1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다.

# 2. 국제조사

한국을 수리관청으로 할 때 국제조사기관은 일 본, 오스트리아, 호주가 있고 비용면에서 저렴한 오스트리아를 많이 이용한다. 국제조사기관은 수 리관청에 의하여 지정되고 둘 이상일 때에는 출 원인이 선택한다. 국제조사기관의 업무로서 가장 주된 목적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선 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 외에 발명의 단일 성, 명칭, 요약서를 검토한다. 그리고 조사가 끝 나면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국 제특허분류(IPC분류), 발명의 단일성 결여에 대

#### 〈표 1〉 PCT 일정표의 기간/시점 설명 일람표

1. 최초출원/우선일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국제출원의 출원. 국제출원일이 우선일
2. PCT 송달료, 기본료, 조사료 납부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
3. PCT 선행기술 조사기간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4. PCT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시한	국제조사보고서가 통상 작성되는 시한
5. PCT 제II장의 청구서 제출시작	국제조사보고서를 접수, 평가후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작 (예비심사료 및 취급수수료 지불)/지정국의 선택
6. PCT 지정료 납부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
7. PCT 국제출원 공개일	PCT팜플렛 및 PCT공보 (Gazette)에 의한 출원의 국제공개
8. PCT 제II장의 청구/ 선택시한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기한, 예비심사료 및 취급 수수료의 납부기한 (우 선일부터 19개월)/국제예비심사 및 국내단계진입 10개월 연기를 위한 지정 국의 선택시한
9. PCT 제I장의 국내단계 진입	국제예비심사에서 선택하지 않은 나라와 PCT 제II장에 구속되지 않은 나라 에서의 국내단계 진입여부 결정기간
10. PCT 제I장의 국내단계 진입	PCT 제II장에 구속되지 않은 나라와 선택되지 않은 나라에서의 국내단계 진입여부 결정기간
11. PCT 제II장의 국제예비심사기간,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기간	국제예비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12. PCT 제II장의 국제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기한	국제예비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28개월
13. PCT 제II장의 국내 단계진입 여부 결정기간	출원일은 모든 선택된 나라에서의 국내단계진입 여부를 이 기간내에 결정
14. PCT 제II장의 국내단계진입	우선일부터 19개월 이내에, 선택된 나라의 국내관청에 국내수수료 납부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

한 의견, 연관성이 있는 선행기술의 문헌 목록이 있다. 국제조사는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는 우선 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 에는 출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국제조사보고서가 접수된 후 출원인은 보정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청구범위만 보정이 가능하며 보 정의 기회는 1회뿐이다. 보정서는 국제조사보고 서 송부일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 에 직접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예비심사 청 구를 한 경우에는 예비심사단계에서 보정해도 되 고 보정의 대상범위도 넓어지므로 국제조사 단계 에서 보정은 필요하지 않다.

## 3. 국제공개

국제공개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에 이루어지며, 이 때 팜플렛은 독일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발간된다. 공개내용으로는 서지사항과 요약서가 기재된 표지,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보정 및 국제조사보고서이고, 이는 국제사무국이 지정관청에 송부한다. 이로써 국제공개의 효과로 공지된 기술로 간주되

며, 국가에 따라서 가보호권이 생긴다. 한국의 경우에는 공지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보상금청구는 국내공개시에만 인정한다.

### 4. 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 청구는 직접 국제예비심사기관 (IAEA)에 제출하는 것이며 국제조사기관, 수리관 청, 국제사무국에 하는 것이 아니다. 예비심사 청 구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 해야 한다. 국제예비심사 청구하기 전에 발명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선행기술조사문헌을 평가하여 더 절차를 진행시킬 것인지 결정하고, 만일 결정이 되면 곧바로 심사청구를 하여 국제 예비심사보고서를 신속히 받도록 한다. 그래야 심 사보고서에 의거하여 출원국가를 최종 결정할 때 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예비심사의 목적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이용가능 성에 대한 구속력 없는 견해를 표시하여 출원인에 게 알리는 데 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거절이유 통지와 비슷한 견해서(Written Opinion)이란 것을 출원인에게 보내는 데, 이 때 출원인은 보정서 또 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보낸 다. 이 때 보정의 범위는 발명의 내용과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으며 국제조사처럼 1회에 그치지 않 는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심사가 끝나면 우선일 로부터 28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보내고 국제사무국은 보고서 사본을 선택관청에 송달한 다.

#### 5. 국내단계

PCT국제출원시 출원인이 출원국가(선택관

청) 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은 출 원당시의 국제출원번역문과 국내수수료이고 국 가 또는 필요에 따라 대리인 선임에 관한 서류, 양도증, 발명자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WIPO에서는 PCT팜플렛, 국제예비심사서, 우선 권서류의 사본을 선택관청에 송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국가별로 심사를 하여 특허를 허여하는데, 국제특허예비심사를 거쳐 합격선에 들어온 출원 은 그 신뢰도가 높아 등록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제 한국에서 국내특허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 도록 한다. 국내특허법에는 PCT출원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들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PCT국제출 원 심사를 할 때 원문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번 역문을 심사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5]. 그 리고 번역문과 원문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 청에서 거절되고 심사중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점 을 주의해야 한다.

# V. PCT관련비용

PCT출원시 제출하는 수수료는 관청별로 보면 수리관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국제사무국에 납부 하는 수수료, 국제조사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있고 상 황별로 분류하면 기본적으로 내는 수수료와 특별 한 경우에 내는 수수료가 있다. 이를 요약하여 도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수리관청의 조사료는 국제조사기관을 위해서 징수하는 비용이고 수리관청의 지정료와 기본료는 수리관청이 국제사무국을 위해 징수하는 비용이다. '97년 6월 15일에 공고된 한국을 수리관청으로 했을 때 국제출원수수료는 (표 3)과 같다.

## 〈표 2〉 PCT국제출원의 비용

관 청 유형	수리관청	국제사무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일반적인경우	- 송달료 - 조사료 - 지정료 - 기본료 - 30매 초과 가산료			- 예비비심사료 - 취급수수료
특별한경우	- 우선권서류 송달료 - 확인료 - 가산료 - 서류복사 수수료	- 승계국에의 국제출원확장수수료 - 정정신청공개를 위한 수수료 - 서류복사 수수료	- 추가 수수료 - 이의신청료 - 서류복사 수수료	- 추가 수수료 - 이의신청료 - 서류복사 수수료

## ⟨표 3⟩ 국제출원수수료

종 류		용도	납 부 액	납부시기			
	송 달 료	수리관청의 출원서 송달 업무등	45,000원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 제 료	기본료	국제사무국의 기본업무	507,000원 (출원서 30매까지) 10,000원 (30매 초과시 1매당)	상동			
	지정료	국제사무국의 지정국에 대한 출 원서 송부 등	123,000원 (1개국당) (11국을 초과하는 지정에 대해 서는 무료임)	국제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년 또는 국 제출원접수일로부터 1개월 중 늦게 만 료되는 날			
조 사 료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업무 등	일 본 : 607,000원 오스트리아 : 177,000원 호 주 : 609,000원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확 인 료		예비지정제도에서 확인 지정에 따른 업무 등	지정료 합계금액의 50%	국제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5개월 이내			
가 산 료		소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국제출원 수수료의 송금 등	납부하지 아니한 국제출원의 수수료 금액의 50% (단, 송달 료 이상 기본료 이하)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 제 예 비 심 사 료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심사비용과 취급 비용	오스트리아 심 사 료 : 2,200 ATS 취급수수료 : 2060 ATS 일 본 심 사 료 : 28,000 JPY 취급수수료 : 20,600 JPY	국제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 에 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함 (서식 은 특허청에서 제공)			

# VI. PCT출원의 장단점

# 1. 장점

PCT출원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를 세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특허출원절차의 편리

PCT국제출원이 양식이 복잡하고 널리 사용되지 아니하여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지만 PCT요건에 맞게 작성된 출원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여러가지 장점을 갖게 된다.

PCT형식은 모든 지정관청에서 유효하므로 당초 출원을 각 국가의 요건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경우에 1군의 발명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발명의 단일성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PCT출원을 하는 경우, 미국으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보다 넓게 단일성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우선권주장 출원시 분할해야 하는 것도 PCT출원을 이용하면 분할출원하지 아니하고 특허를 심사받을 수 있다.

### 나. 수수료 절감

여러 국가를 지정관청으로 선택할 경우 11개 국가 초과시에는 이에 대한 지정국가 수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없다. 유럽특허청에서는 국제조사 보고서가 유럽기관에서 작성된 경우 유럽조사료 는 무료 또는 일부 감면이 되고 국제예비심사보고 서가 유럽에서 된 경우 50%가 감액된다. 이와 같 은 비용은 일본에서도 적용되어 국제조사보고서 가 JPO(일본 특허청)에서 작성된 경우 심사청구 료의 80%정도가 감액된다.

#### 다. Last-Minite출원

국제예비심사를 받을 경우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라는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의 변화와 상품의 수출입 등을 보아 30개월까지 외국출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불필요한 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만일 여러 군데를 출원하고나서 특허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많은비용의 손실이 있지만, PCT출원의 예비심사를 받아 특허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때 포기함으로써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라. 특허 획득의 용이성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및 국제예비 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심사를 거침 으로써, 이들 국제기관의 공신력 때문에 합격선에 들게 되면 각 선택관청에서 특허획득이 용이하다.

# 2. 단점

PCT제도가 아직도 널리 사용되지 않는 이유 는 절차와 법규가 복잡한 점을 들 수 있다. 문서 작 성하는 서류도 복잡하고 법규 자체도 이해하고 있 는 사람이 많지 않아 널리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비용을 계산해 보면 비용이 5개국 이상이 되어야 PCT출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지 그 이하는 비용상 절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은 국가에 출원할 때에는 PCT보다 우선권주장출원을 이용한다. 또 다른 하나는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되는데 PCT출원이 국내 서면제출기한 내에 제출하고 나서 심사신청을 하 므로 조약우선권을 이용하는 것보다 등록이 늦게 되어 자연적으로 권리활용기간이 적다. 때로는 심 사관의 심사부담을 덜어 오히려 우선권주장출원 보다 일찍 등록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 적으로는 등록시점이 우선권주장출원보다 늦다. 물론 국제공개시 국가에 따라 가보호신청이 있기 는 하지만 확실한 실시권을 가지려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활용기간이 짧다는 것이 또 하나 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 VII. 결 론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나 전세계적으로나 PCT국제출원이 늘어 나고 있다. 출원건수 뿐만 아니라 우선권주장출원을 통한 경우와 비율적으 로 볼 때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그 만큼 이익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PCT국제출원이 늘어나고 있 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국제예비심사기관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PCT출원이 더욱 편해질 것으로 보이며 그 출원량도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 PCT국제출원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법령 및 제도, 심사관의 수와 자질 등이 크게 개선되고 향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PCT국 제출원시 작성문서는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되어 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어로만 제출해도 PCT국 제출원으로 접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만 확정되면 한국에서 PCT국제 출원은 현저하게 증 가될 것으로 보인다. PCT제도는 약간의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의 편리성, 다국가 출원시 경 제성, 기술적 추이를 보아가며 출원국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더군다나 한국의 최대난관 을 해결한 한국어로 PCT출원가능한 점 등이 있 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반영시 켜야 할 것이다. 발명자들이 우수특허를 여러 국 가에 출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PCT국제출원제도 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참고문 헌

- Robert P. Merges, "International priority," Patent Law and Policy, Michie Company Law Publisher, 1992. pp. 355-368
- [2] Ralph H. Folsom, "Paris Conventio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St. Paul Ministry West Publishing Co., pp. 223-225, pp. 230-232, 1996.
- [3] EPO, "Examination procedure," How to Get a European Patent, 1995, pp. 26-30.

- [4] 특허청, PCT국제출원서류의 작성요령, 1996, pp. 19-32.
- [5] 김태만, "PCT국제특허출원의 제특례규정에 관한 소고," 특허정보, 특허청, 94. 5., pp. 45-50.